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4일, 차지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6. 7. 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2026. 7. 22.) 상정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2026. 8.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6. 8.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차지호의원)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고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번해져 생명, 건강, 산업, 생태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음. 우리나라도 작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5.6℃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초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인명과 재산, 농산물, 수산업 등 사회·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한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포괄적 내용만으로는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적응정책을 수립·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잡·다양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예측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적응주류화와 적응성과·진척도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적응책임관 지정으로 대책 추진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적응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현장 맞춤형 실행체계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